[(재)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96호]

「2026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2026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5. 18.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 및 신규 유통 루트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모집기간: 2026. 5. 18.(월) ~ 2026. 5. 29.(금)

○ 참가전시: 사업기간 내 국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콘텐츠 관련 전시・박람회 중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가 신청 가능

※ 단, 신청 콘텐츠와 전시회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 적합성,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규모: 도내 창작자 및 기업 3팀 내외(**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불인정 집행액은 환수 조치함

○ 지원대상: 문화콘텐츠 IP를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창작자(개인・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및 거주지 등록 인정 기준일: 본 지원사업 공고일

※ 문화콘텐츠 분야: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음악・게임・방송・실감콘텐츠 등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사항 (지원금 한도 내)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 전시부스 임차비 및 전시 운영비(전기 등) 지원 - 부스 설치 및 디자인 제작비 지원 - 홍보영상, 리플렛,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전시용 패널, 디지털 화면 콘텐츠 등 전시자료 제작비 지원 - 방문객 대상 홍보물 제작비 지원
참가기업 **부담사항**	- 체재비, 인건비, 자산성 물품 구매비 등 ※ 사업 목적 및 전시 참가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불가

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지원조건

- 지원금(300만원)의 10% 이상(30만원 이상) 자부담 매칭 필수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기준 정산 실시
- 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서류, 참가 증빙자료 포함) 제출 필수
-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예산 집행 및 정산

○ 참여제한

1. 신청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내용, 산출물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산하 공공기관 포함) 또는 제주콘텐츠진흥원 타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중복지원 불가)
3.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 사유로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중인 경우
5.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징수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6. 공익의 목적이 아닌 단순 영리 목적인 경우
7.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5. 18.(월) ~ 5. 29.(금)

○ 접수기간: 2026. 5. 18.(월) ~ 5. 29.(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dobby064@ofjeju.kr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확인 필수 ☎ 064)735-0601

- 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파일명 및 메일제목: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_000(단체/개인명)

  ※ 파일형식: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항목
1	지원신청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2	참가계획서		○
3	자기부담금 확약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4	심의(평가)위원 추첨표		○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6	서약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8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9	가점항목 증빙서류		해당 시
10	기타 추가자료	○주요 콘텐츠 참고 자료(이미지, 파일, 굿즈 등) ○기타 창작자 보유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국내/외 수상이력, 굿즈 판매매출 등)	선택

5. 선정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2026년 6월 중 ※일정변동 가능

[신청 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과 발표]		[협약체결]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 접수	➔	제출 서류 검토 (담당팀)	➔	선정평가 진행 (서면평가)	➔	선정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신청자격 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확인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심의위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의위원(3배수) 대상 신청자 추첨표 집계를 통해 최종 심의위원 5인 이내 구성
- 최종선정: 평가지표 내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심사기준

배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콘텐츠 경쟁력	○ 완성도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인가 ○ 차별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30점**
전시 적합성	○ 전시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는 콘텐츠인가 ○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가	**25점**
수행역량 및 실행가능성	○ 수행 경험 또는 콘텐츠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있는가 ○ 사업 수행 능력 및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25점**
기대효과	○ 전시를 통한 홍보 및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가 ○ 향후 사업화 및 지속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20점**
합계		**100점**

배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우대가점	○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 입주기업 및 입주창작자	**2점**
	○ ESG 주제 관련 정부 또는 공공기관 시행 강의 이수기업 * 대표자, 과제책임자 이수 필수(교육 이수증 제출 시 인정) * 2026년 수료건만 인정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2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 기관·단체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단체	**1점**

6. 유의사항

○ 전시회 참가신청 완료 또는 참가 예정 상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후 참가 확정 증빙 제출 필수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 및 이미지는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홍보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 진흥원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진흥원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전시박람회 주최 측 일방적 참가불가 통보 등

○ 선정 포기 또는 협약 해지 시 차순위 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전시회 참가 시 행사 전날까지 참가 부스 데코레이션을 완료해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

7. 문의처

담당부서	이메일	전화
콘텐츠확산팀	dobby064@ofjeju.kr	064)735-0601

『2026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

1. 사업비 사용 원칙

사업비 사용 원칙
◦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협약기간(사업기간)으로 함 ※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 또는수정 예산집행 계획서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 전 최종 수정 가능함
◦ 수행단체는 사업수행 중 중요한 추진사항(참가 행사일정 및 기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단체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로 산정할 수 없으며 집행도 불가함 ※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및 창작자 개인이 지원받는 경우 부가세 산정 및 집행 인정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필수

2. 사업비 불인정 공통사항

불인정 공통 사항
◦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단, 회계정산 수수료 제외)
◦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인정되지 않는) 증빙서류(영수증)
◦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 전용 카드 또는 사업비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 확정된 사업비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별표 1]에 따른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에 집행한 경우
◦ 간이 영수증 등 집행 증빙이 수기인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비 편성항목 및 해소

구분	내용
임차비	◦ 전시부스 임차비(신청비에 포함된 경우 운영경비로 집행) ◦ 행사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치, 기자재 대여비 ◦ 전기, 인터넷, 비품 등 부스 운영 부대시설 사용료 ※ 자산취득을 위한 구입 절대 불가
행사홍보비	◦ 전시 관련 각종 홍보물(온·오프라인) 디자인 비용 ◦ 부스 디자인, 배너, 포스터, 리플렛 등 시각홍보물 제작비 ◦ 홍보영상, 디지털 콘텐츠, 전시 상영자료 제작비 ◦ 전시 현장 운영을 위한 홍보용 소량 제작물 제작비 ※ 판매 목적 또는 고가 기념품성 제작물 제외
운영경비	◦ 전시회 참가 신청비(제반비용 일체) ◦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 전시물 및 홍보물 운송·택배비 ◦ 행사 운영 관련 부대비용 ◦ 기타 전시 참가 및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

4. 집행 증빙 영수증의 종류

구분	내용
카드결제	1. 카드영수증(매출전표)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세부내역 표기_품목, 규격, 수량 등) 3. 납품서 혹은 거래내역서(세부내역 표기_품목, 규격, 수량 등)
계좌이체	1.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서) 2.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세부내역 표기_품목, 규격, 수량 등) 4. 납품서 혹은 거래내역서(세부내역 표기_품목, 규격, 수량 등)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계약서(100만원 이상 집행건 필수 첨부) ※ 정해진 비용에 대한 지출의 경우 해당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
공통	거래내역 및 집행 관련 사진 - 사업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물품수령 시 촬영한 사진 예) 홍보인쇄물, 음향조명, 무대제작, 시설설치비, 의상소품제작, 악기물품대여 등

[별표 1]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